#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18 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:서영석·조인철·박홍배

소병훈・문진석・윤종군

김재원 · 최기상 · 윤건영

김용민 • 전진숙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보이고,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음.

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(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)로 확대하고,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 하고자 함. 또한 근로자가 불임·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,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(안 제18조, 제18조의2, 제18조의3 등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371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배우자 출산휴가"를 "배우자 출산휴가,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및 난임치료휴직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8조의2제1항"을 "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"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"10일"을 "30일(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)"로 한다.

제18조의3의 제목 "(난임치료휴가)"를 "(난임치료휴가 및 난임치료휴직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"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"를 "난임치료를 위하여"로, "3일"을 "30일"로, "최초 1일"을 "사용한 휴가기간"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"다만, 해당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2항) 중 "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"를 "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난임치료휴직

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3항) 중 "난임치료휴가"를 "난임치료휴가 또는 난임치료휴직"으로 한다.

-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불임·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를 위하여 휴 직(이하 "난임치료휴직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난임치료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난임치료휴가를 주거나 난임치료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 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⑤ 난임치료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, 사업주는 난임치료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.

다만,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3. 제18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 또는 난임치료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,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난임치료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

우

3의2. 제18조의3제2항·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난임치료휴직 신청을 받고 난임치료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, 난임치료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산전후휴가 등 지원에 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, 난임치료휴가 및 난임치료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	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
지원)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	지원) ①
따른 배우자 출산휴가, 「근로	<u>배우자 출산휴가, 제18조</u>
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	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및
전후휴가 또는 유산・사산 휴	난임치료휴직
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	
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	
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	
상당하는 금액(이하 "출산전후	
휴가급여등"이라 한다)을 지급	
할 수 있다.	
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	②
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	
한도에서 <u>제18</u> 조의2제1항 또는	제18조의2제1항 및 제1
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제4항에	8조의3제1항
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	
본다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	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 -
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	
출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 "배	

우자 출산휴가"라 한다)를 청 구하는 경우에 <u>10일</u>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.

### ② ~ ⑤ (생 략)

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"난임치료휴가"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u>3</u> 0일(배우자가 한
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
경우에는 40일)
<u>.</u>
·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 및 난임
치료휴직) ①
-난임치료를 위하여
30일
사용한 휴가기간
<u></u>
<u>다만, 해당 난임치료휴</u>
<u>가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</u>
가 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
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
<u>임을 면한다.</u> ② 시어즈는 그리기가 보이
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불임・
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를 위
하여 휴직(이하 "난임치료휴직"
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
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난임치료휴직

<신 설>

<신 설>

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,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단서 신설>

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| 료휴직------

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난임치료휴가를 주거나 난임치료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 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 경할 수 있다.

⑤ 난임치료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, 사업주는 난 임치료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 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 무에 복귀시켜야 한다.

(6) -

-----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난 임치료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 자를 해고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u>⑦</u> 난임치료휴가 또는 난임치

한다.

제37조(벌칙) ① (생 략)

-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2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- 3. ~ 9. (생 략)
- ③ (생 략)
-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데37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2의3. 제18조의3제6항을 위반하
여 난임치료휴가 또는 난임
치료휴직을 이유로 해고나
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거
나,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
없는데도 난임치료휴직 기간
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
<u>경우</u>
3. ~ 9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<b>4</b>
<u>,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3의2. 제18조의3제2항·제5항을</u>
위반하여 근로자의 난임치료
휴직 신청을 받고 난임치료

	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,
	<u>난임치료휴직을 마친 후 휴</u>
	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
	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
	업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
	<u>경우</u>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